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7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이병진·서천호·박해철

박용갑 • 권향엽 • 문대림

서삼석 · 허성무 · 임미애

강준현 • 이상식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 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제4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지침(이하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시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
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
	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
	록 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에서	<u>⑤</u> <u>제4항</u>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	
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u>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u>
	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수 있다.</u>
<u>⑤</u> <u>제4항</u>
<u>.</u>

대학원의 설치 · 운영을 지원할

제31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 농업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시행기 관(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 이라 한다)은 제1항의 평가지 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 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 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농업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